

2008. 8. 19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 
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 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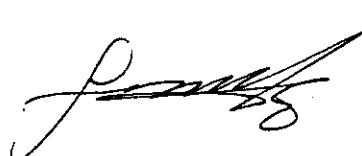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 
관한 조례안 1부.

발의자 : 박 기 석 의원 (서명 ~~날인~~ 날인)

외 6인

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 
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박 기석	(113)113	
김 명성		
劉永和	이영복	
成明重		
이동우		

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 
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조례희	조례희	
양순경	양순경	

##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1276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8. 19.  
발 의 자 : 박기석의원외 6인

### 1. 제안이유

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 
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  
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 
으로 한다.

### 2. 주요내용

- 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(안 제3조)  
    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 
    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 
    설계도면 점검.
- 편의시설 설치 검사(안 제4조)  
    :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 
    여부 점검
- 사전점검 대상 시설(안 제5조)  
    :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 
    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.

○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(안 제6조)

- 점검 시기 : 대상 시설의 협의, 시공 및 준공 전
-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

○ 구성(안 제7조)

- 점검요원(5명이내)
  - : 임명직 : 2명(건축 인허가 담당 1명, 장애인편의시설지도 감독담당 1명)
  - : 위촉직 : 장애인 단체와 제천시 건축사회,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학계 등
- 임기 : 2년(연임가능)

○ 점검요원의 직무(안 제8조)

-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

○ 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(안 제11조)

-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

○ 점검 결과의 반영(안 제12조)

-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.

붙임 1.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증 편의시설 설치사항  
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점검"이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.

**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)** 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편의시설 설치 검사)**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전점검 대상 시설)**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.  
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)**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,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점검요원의 구성)**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.

② 점검요원은 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#### 1. 임명직

가. 제천시 공무원 2명(장애인 편의시설 지도·감독담당 1명, 건축인·허가 담당 1명)

#### 2. 위촉직

가. 제천시 장애인 단체 요원

나. 제천시 건축사회 요원

다.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점검요원에게는 「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점검요원의 직무)**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을 한다.

**제9조(점검요원의 의무)**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10조(관계 공무원의 의무)**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)**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점검 결과의 반영)**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[별지 서식]

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서											
대상 시설물	소재지										
	명 칭										
	용 도										
	기 타										
시 설 주	성 명		전화번호								
점검일시											
점검항목											
점검결과											
특기사항											
점검자 종합의견											
<p>「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.</p> <p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table> <tr> <td>점검자</td> <td>서명(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서명(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서명(인)</td> </tr> <tr> <td>담당공무원</td> <td>서명(인)</td> </tr> </table> <p>제 천 시 장 귀하</p>				점검자	서명(인)		서명(인)		서명(인)	담당공무원	서명(인)
점검자	서명(인)										
	서명(인)										
	서명(인)										
담당공무원	서명(인)										
첨부서류	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.										

## □ 관계법령

### ○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○ 障碍人·老人·妊娠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

第6條 (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)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施設 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

第7條 (對象施設)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對象施設"이라 한다)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삭제 <2005.1.27>
2. 公園
3.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
4. 共同住宅
5. 삭제 <2005.1.27>
6. 通信施設
7.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·施設 및 그 附帶施設